

【26회.2020년】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1칙형】

【문36】 외국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제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이어야 한다.
- ②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위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
- ③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에 관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임원등기와 관련하여 보면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임원이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④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상업선례 201612-2호).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상 614조 1항). ㉠과 ㉡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업선례 1-287. ③ 외국회사 영업소의 경우 국내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과 회사설립의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한다(상 614조 2항,3항; 상업선례 1-388). ‘국내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이라 함은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상 317조 3항)이므로, 본점의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상등 26조 2호의 각하사유).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상등 77조 내지 81조). ④ 등기예규 1534호. ⑤ 법원은,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때 또는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재산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상 620조 1항). 따라서 법원의 청산개시 명령이 없는 한 청산절차 없이 영업소 폐지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37】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는 공고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공고는 판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회의사록을,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사록을 각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이사와 감사는 설립경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서면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만약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다면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는 성립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기의 효력을 창설적 효력이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 289조 1항)이며, 등기사항(상 13조, 317조 2항)이다. 회사의 공고는 판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상 289조 3항 본문).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상 289조 3항 단서). ② 구 상법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③ 주식회사 설립시 이사와 감사 등의 선임은,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들이 의결권의 과반수로(상 296조 1항),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에서(상 312조) 각 선임하여야 하므로, 해당되는 서면(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129조 8호(발기설립-발기인회의사록), 9호(모집설립-창립총회의사록)). ④ 상 298조(발기설립시), 상313조(모집설립시); 상등규 129조 5호(첨부서면). ⑤ 상 172조.

【문38】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 및 그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이사로 선임될 자를 직접 정하지 않고 그 선임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상법이나 정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이사에 대한 해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사항이므로 정관에 의해서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 ③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 ④ 정관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때이고,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연장에 관한 상법 제38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이사가 개명을 한 경우 그 등기기간은 재판을 받은 자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채무자회생법 263조 2항. ②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 사항에 해당하므로(상 361조)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이사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 ③ 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일종의 위임관계이므로,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청약)와 피선임 임원의 취임승낙으로 임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민 680조; 대판(전) 2017. 3. 23. 2016다 251215). 선임결의 자체가 청약이므로 별도로 대표이사가 청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대판 2010. 6. 24. 2010다13541; 등기예규 282호; 상업선례 1-138. ⑤ 상업선례 2-37.

【문39】상법상 회사의 합병 및 합병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아니다.
- ②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에서 정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나,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③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합병할 수 없다.
- ④ 소멸회사 해산등기의 신청에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합병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일체의 첨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⑤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는 각각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지만,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는 당해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각각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를 들어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상업선례 201401-1). ②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232조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회사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상업선례 3-955). ③ 채무자회생법 55조 1항 5호. ④ 상등규 55조 3항. ⑤ 상등 23조 1항, 63조 1항.

【문40】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사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 ②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④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⑤ 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사건은 해당 직무대행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③, ⑤의 전문] 지문은 '일시이사'에 관한 규정을 묻는 지문들이고, [④, ⑤의 후문]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치분에 의한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을 묻는 지문들이다. 상법 제386조 제2항은 '일시이사'에 대한 규정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④~⑤] 지문을 구별없이 출제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① 비송 72조 1항. ② '일시이사'의 선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 84조 2항, 81조 2항). ③ 비송 84조 1항. ④ 비송 85조 2항. ⑤ '일시이사'의 선임은 회사의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이 된다(상 386조 2항). '가처분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사건' 신청은 해당 직무대행자가 신청인이 된다(비송 85조 1항).

【문41】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 ②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 ③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 ④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후에 사건을 신청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고,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만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⑤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비송재판에서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그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비송 2조 1항), ㉡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비송 2조 2항),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비송 2조 3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비송 14조. ③ 비송 24조. ④ 여러 법원이 동시에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비송 3조 본문. '우선관할'). 다만 이 경우라도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비송 3조 단서). ⑤ 비송 20조 2항.

【문42】 상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전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주식의 내용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하지 아니한다.
- ③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존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한 민법 제690조에 근거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될 것이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관이 기존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파산법인이 신임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기존이사의 퇴임등기와 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으로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결정등기 신청은 상임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임등기법 제26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①

[해설]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상등 15조 1항).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상등 15조 2항).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열람만 허용되고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등기예규 680호). ② 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 각 관할등기소별로 각각 등기기록을 두게 되고,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상 35조). 현행 실무상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3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3조'에 의해 지점의 등기사항으로 정해진 것만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의 내용' 등 주식, 자본금 및 사체에 관한 사항들은 지점의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다. ③ 상법선례 1-266. ④ 가처분 직무대행자의 지위는 '법인이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으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 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대판 2000. 1. 28. 98두16996).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이사 변경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상법선례 2-112호). ⑤ 상법선례 201903-1.

【문43】 지배인의 선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하므로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
- ③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인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⑤ 회사와 합자조합의 지배인 선임등기는 지배인 등기부가 아닌, 회사와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민 117조. ② 함명·합자회사의 사원, 주식·유한회사의 이사는 당해 회사의 지배인이 될 수 있으나(대판 1968. 7. 23. 68다442), 주식·유한회사의 감사는 그 회사 또는 자회사의 지배인이 될 수 없다(상 411조, 570조). ③ 상법상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인원수에 관하여는 제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고, 수인의 지배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선례 1-60). ④ 상법선례 200702-1(지배인은 임원은 아니므로 그 취임승낙은 불요한다). ⑤ 상등 51조 1항(↔ 개인 영업주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지배인 등기부에 한다).

【문44】 주식회사의 지점의 설치·이전 등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점이 설치 또는 이전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에 동일상호가 등기되어 있어도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의 등기가 가능하다.
- ②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본점소재지에서 신청할 때와 같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고,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④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 ⑤ 본점 또는 지점의 관할 등기소에서 1개의 신청서로 각각 수 개의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는 경우에도 설치·이전·폐지의 등기에 대해 각각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정답] ②

[해설]

①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1547호 4조 2항). ② 지점의 소재지(및 명칭) 등은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이므로,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상등 24조 2항 2호; 상업선례 1-126), 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도 없다(상등 25조 3항 2호; 상업선례 1-16). ③ 상등 51조 3항. ④ 상업선례 1-116. ⑤ 등기예규 1038호 6.

【문45】 회사의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② 종종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종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종 대표자라도 위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한편 법원이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가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상무의 행위로서 그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비송 77조, 78조. ② 대판 1993. 10. 12. 92다50799. ③ 법원이 일시이사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비송 84조 1항). 이때 이사와 감사에게 진술의 기회를 준 이상 법원은 그 진술 중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별로 빠짐없이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대결 2001. 12. 6. 2001그113). ④ 이 사건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비송 72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제소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 또는 신청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판 1956. 1. 14. 4288민상126; 대판 1963. 12. 12. 63다449; 대결 1976. 2. 11. 75마533). ⑤ 법원이 가치분으로써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가치분명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상 408조 1항 본문). 이 경우 회사의 상무 외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상 408조 1항 단서). 이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상무에 속하는 행위이지만,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이다(대판 1989. 9. 12. 87다카2691).

【문46】 상사 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② 법원은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 ③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심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④ 이해관계인이 악의로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이해관계인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은 조직변경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각각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비송 86조 1항(서면신청), 3항(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비송 86조의2 1항(진술을 들어야 한다), 2항(심문과 재판의 병합). ③ 비송 88조 1항 및 101조 1항(신청기간), 88조 2항(심문기간), 89조 1항(재판의 효력). ④ 이해관계인이 회사해산명령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 176조 3항). 회사가 이 청구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상 176조 4항). ⑤ 비송 104조(합병 공동신청), 105조(조직변경 공동신청).

【문47】 상임등기의 신청인 및 신청행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그 변경등기는 본국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 ② 회사를 상대로 이사 등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따른 퇴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퇴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의 결과 범ભ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라도 후임 이사 등의 취임등기의 신청 없이 이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루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에 기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상등 23조 3항. ② 퇴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 퇴임의 결과 이사 등의 권리의무행사가 되는 경우에는 퇴임등기가 불가하므로, 후임 이사 등의 취임등기의 신청없이 이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상업선례 200605-5). ③ 등기신청에 첨부된 위임장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 인감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상등규 66조 1항 단서). ④ 대판 2004. 9. 24. 2004다28047. ⑤ 등기신청의 대리인은 업으로 하지 않는 한 자격자대리인을 요하지 않는다(법무사법 3조). 그러나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상등규 67조 1항),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등기예규 1612호 3조 1항 2문).

【문48】 상임등기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법원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파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고, 번역인의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 ④ 전자신청으로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을 원용할 수 없고, 신청서별로 첨부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따로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부인되므로(상 600조 1항), 이 경우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법원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상등규 128조 1항). ② 등기예규 1609호 5조. ③ 상등규 52조 5항; 상업선례 1-22. ④ 상등규 53조 2항 단서. ⑤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의공관공증법’ 30조 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예규 1534호 3조).

【문49】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 ② 주식회사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록 작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나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③ 모집설립이나 발기설립 모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주급납입을 받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위 증명서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연장하거나 관련 정관 규정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산되지 않으므로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구분점 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과 신분점 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구분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한 원시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상 289조 1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92조 본문).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상 292조 단서)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 없다. 한편 변경정관은 그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변경되므로,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판 2007. 6. 28. 2006다62362). ②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373조 2항). 등기신청서에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할 때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66조의2 본문). 의사록 자체에 인감을 날인하라는 규정은 없다. ③ 상등규 129조. ④ 상업선례 1-68, 1-256. ⑤ 상등 55조.

【문50】 상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이 202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20. 5. 6.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20. 4. 29.부터 발생한다.
- ②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2인 이상의 인감은 각각 달라야 한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조합장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상법상의 회사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등기기록의 목적관에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첨부정보가 아니다.
- ⑤ 확정된 주주총회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였는데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상등 3조 2항). ② 등기예규 1661호 2. 나.). ③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조합장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는 첨부정보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4호; 상업선례 201804-3). ④ 이는 영업에 관한 등록으로서 영업수행을 위한 요건이며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그 등록을 증명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52조 1항 2호의 첨부정보가 아니다(상업선례 201812-1호). ⑤ 수소법원의 촉탁등기를 등기관이 각하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등기신청인에 한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상업선례 201507-3).